

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

(박은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 348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9.

발의자 : 박은정 의원 외 11명

1. 제안이유

-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지속적이고,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예방 사업 및 지원(안 제5조)
-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 1

4.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 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
6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4

7. 조례안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- 조례안 예고 : 2023. 11. 3. ~ 2023. 11. 8.

【붙임 1】 제정조례안

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마약류”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.
2. “유해약물”이란 「주세법」에 따른 주류,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담배,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주류, 담배, 흡입제 등 신체적·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.
3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(이하 “마약류 등”이라 한다) 오남용으로부터 안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.

1.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
2.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
3.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
5.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경찰서,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
6.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

지원

7.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시장은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·단체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)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

2.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·지원사업

3. 청소년 마약류 등 중독예방 교육사업(학교교육과 연계 사업을 포함한다)

4.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

5.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

6.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비밀준수)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,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·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78)

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9-348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12월 1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수정이유

- 사업의 목적 및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 조문을 수정함.

주요골자

- “등” 을 “등 오남용” 으로 한다. (안 제5조제1항)

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등” 을 “등 오남용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사업)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.	제5조(사업) ① ----- <u>등 오남용</u> ----- -----.